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, 금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·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* 제정(2개 업종): 파스너제조업, 골판지가공업
 - * 개정(16개 업종): 건설업, 해외건설업, 정보통신공사업, 조선업, 조선제조임가공업, 해양플랜트업, 제지업, 가구제조업, 제품·시각·포장디자인업, 환경디자인업, 디지털디자인업,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,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, 상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, 상용소프트유지관리업, 경비업
3.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(안)을 마련하였습니다.
4. 이에 귀 단체에 별첨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2. 16.(금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별첨: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(안) 각 1부(별도송부). 끝.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자 중기중앙회,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, 금속파스너협동조합,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정보통신공사협회,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한국제지연합회, 한국가구산업협회, 대한가구협동조합,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한국경비협회

행정사무관 이호 기업거래정책 2022.12.6.
과 과장 박중배

협조자

시행 기업거래정책과-2269 접수

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, 정부세종청사 2동 (어진동) / www.ftc.go.kr

전화번호 044-200-4589 팩스번호 044-200-4656 / lico25@ftc.go.kr / 비공개(5)